

2004. 06. 09.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참가 보고

보고인 : 정책 김 광이

1. 주요 핵심 의제

1) 국제협력

- 필요성 강조 : 장애인의 80%가 개도국에 삶, 장애인 인권 실현에는 특별한 기술이 지원되어야 함, 기금 마련 등
- 분위기 : 대체로 지지하거나 공감하는 입장.
EU를 비롯하여 일부국에서는 국제협력 이전에 각국가의 조약 실행책임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

2) 장애여성

3) 접근성

2. 장애여성 조항 신설을 위한 활동

- 1) 5월 24일 : 복지부에서 한국정부의 제1의 안건으로 장애여성 조항 신설 제안 계획을 한국추진연대에 발표
- 2) 한국추진연대의 장애여성 초안을 바탕으로 정부안 내용 협의(2개조 5개항)
 - 한국추진연대의 초안에서 2개항목(빈곤, 관련자 교육)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용.
 - 통계조사에서 “목적에 따라 장애여성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것을 삭제하고 모든 인구조사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장애여성 항목을 설정할 것만 포함.
 - 정부 대표 참가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여성 조항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취지문 작성 제안 및 몇 차례 대화 시간을 가짐.
- 3) 5월 28일 “제15조 장애아동”앞에 제15조로 장애여성이 들어가야 할 것을 초안과 함께 전체 회의에서 제안.
- 4) 첫날부터 장애여성 조항 신설지지 요청을 위한 섭외 활동
 - (1) DPI,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아동보호연대(Save Children), 세계청각장애인연맹, 각국 NGO,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표 등과 개별적 섭외.
 - (2) NGO's 미팅에서 안건 채택 요청 ○ 마지막 날 토론.: 내용에는 근본적으로 동의

○ 방식에서 두 가지 견해

○ 전문이나 일반 원리, 각 조에 넣자.

○ 별도의 조항이 되어야 한다. ○ 세계시각장애인연맹, 세계청각장애인연맹, 아프리카 지역, 콜롬비아 등

5) 마지막 날 4차 특별회의(8월 23일 ○ 9월 10일)에서는 반드시 장애여성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촉구문 배포.

3.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 활동

1) 장애여성 조항 신설 지원활동

2) 매일 두 차례 정부대표단과의 미팅을 통하여 당일 논의될 조항에 대한 한국추진연대의 의견 전달과 협의

○ 10조 인간의 자유와 안전 : 장애인은 인간적으로 다뤄져야하며, 인간으로서 타고난 존엄에 대한 존중을 받고, 자유박탈의 수준은 일반적 수준보다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야하며, 후견인 접촉에 대한 보장, 보장구 및 의료적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 등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한다.

○ 제12조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 : 각 국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가정 안팎에서 폭력, 상해 혹은 방치되거나 부주의한 대우, 성적 착취와 학대를 포함한 혹사 혹은 착취 등에 좀더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는 문구에 '유기'(abandonment)라는 개념을 삽입해야한다

○ 제13조 표현과 의사와 자유와 정보접근성 : 각 국가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수준의 전문 인력을 확장해야한다

○ 19조 접근성(accessibility) :

*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대중교통수단(항공기, 선박, 열차 등을 포함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을 발전해야한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접근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수단의 보완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발전하고, 운영해야한다

○ 20조 개인의 이동 : 한국추진연대 의견 반영.

○ 제 22 조 노동권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문구를 초안 문서에 추가해야한다고 제안. "각 국가들은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책과 관련해 복리후생(compensations and benefits)이라는 개념 추가할 것을 제시.

3) 주요 의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NGO 발언

○ 제2조 일반원리 : 한국초안위원회 김동호 임시위원장 NGO발언 ; 당사자주의 (selfrepresentation) 원리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

○ 제15조 독립적으로 사는 것과 지역사회에 통합되는 것 : 이광원 위원 NGO발언 ;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성 강조.

○ 제20조 개인의 이동 : 배용호 위원 NGO 발언 ; 일부 국가 대표들은 이 조약에서 일반화하고, 간결화해야한다고 제시했지만, 본 조약은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를 보장해야하며, 이동권은 장애인의 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하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권리이다.

○ 제 21조 건강과 재활 : 이미 다른 조항에서 재활의 개념이 반영돼 있다. 만약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면, 노동권, 교육권 등의 조항과 중복될 것이다. 이 조항에서 굳이 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노동권, 교육권, 건강권 등에 대한 조항은 재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설명될 수 있다.

재활을 목적이나 권리로 다루서는 안 된다. 재활은 오히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재활은 전문가 중심적이며 책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왔다. 최근 재활의 영역이 늘어났지만, 이러한 동향을 감안해도 재활을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4) 국제협력과 모니터링에 대한 의견서 배포

(1) 국제협력 조항 신설을 촉구 : 국제협력 과 기금조성 내용 포함.

(2) 모니터링 : 각국의 보고서 이행과 국가간 감시체계 및 모니터에 NGO 참가시킬 것.

4월 12일 각 2012년 NGO's 담당자 - 2012.2.20 - 7월 12일

8/22 2012년 12월

장영희 (Korea Network)